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590
------	------

2025. 4. 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김형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4.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형재 의원)

### 1. 제안이유

-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음. 서울시 홍보대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됨.

- 그러나 2025년 2월 기준, 서울시가 최근 5개년간 위촉한 52명의 홍보대사 중에는 최근 서울시 홍보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연임되는 경우가 있는 등 서울시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에 특별한 홍보성과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홍보대사의 연임은 최대 2차례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 연임 가능 횟수를 2차례로 규정(안 제3조 제3항).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홍보대사가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고, 탁월한 업적이 있는 경우만을 예외로 하여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촉) ①·② (생략)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조(위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하되, 2차례 --. 다만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2) 홍보대사 운영 현황

-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1명 ('25.4. 기준)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음.

###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현황(2025.4.) >

연번	성명	전문분야	최초위촉	연임여부(횟수)
1	김소영	아나운서	2023년	연임(1)
2	김태균	방송인	2017년	연임(3)
3	김현정	한국화가	2018년	연임(3)
4	다니엘 린데만	방송인	2017년	연임(3)
5	박지호	기획가	2018년	연임(3)
6	박진희	배우	2018년	연임(3)
7	션	가수	2023년	연임(1)
8	송지오	패션디자이너	2018년	연임(3)
9	슈카	경제전문 유튜버	2023년	연임(1)
10	알베르토 몬디	방송인	2017년	연임(3)
11	양태오	인테리어 디자이너	2018년	연임(3)
12	오상진	아나운서	2023년	연임(1)
13	온오빠	틱톡커	2023년	연임(1)
14	유현준	건축가	2018년	연임(3)
15	이영지	가수	2021년	연임(1)
16	장윤주	모델	2017년	연임(3)
17	정샘물	메이크업 아티스트	2018년	연임(3)
18	제이슨	방송인	2019년	연임(2)
19	조수미	음악가	2019년	연임(2)
20	최불암	배우	1998년	연임(13)
21	홍현희	방송인	2019년	연임(2)

※ 동 조례 제정('10.4.) 이전 위촉된 홍보대사의 연임 횟수는 2년 임기 기준으로 산출

-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나,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음.

### (3) 개정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동 개정안은 홍보대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음.
- 일반적으로 조례가 직위에 대한 임기 및 연임 제한을 두는 이유는 특정 개인이 장기간 직위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인물을 정책에 참여시키기 위함임.
- 특히 홍보대사의 경우, 트렌드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여야 하는 분야의 특성상 임기 및 연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비교적 크다고 판단됨.
- 그러나, 2025년 4월 활동 홍보대사 21명 중 초임인 홍보대사가 없고 15명(71.4%)이 2번 이상의 연임을 한 점, 2024년 이후 신규 홍보대사 위촉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홍보대사 구성은 상당한 경직성을 띠고 있다고 보임.
- 또한, 두 차례의 연임 제한으로 인해 6년을 홍보대사로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시정홍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홍보대사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동 개정안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임.
- 다만, 일각에서는 다수의 현직 홍보대사가 2회 이상 연임한 상황에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이 일시에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그러나, 동 개정안이 탁월한 업적이 있는 홍보대사에 대하여 연임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고, 2024년 홍보대사의 전체 인원 29명 중 활동자 수는 14명, 활동 횟수는 29회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큰 규모의 홍보대사 구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오히려, 서울시는 홍보대사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활동 관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적정 규모를 파악하고 향후 신규 홍보대사 모집 및 조직 운영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형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9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김형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희원,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8명)

### 1. 제안이유

-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음. 서울시 홍보대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됨.
- 그러나 2025년 2월 기준, 서울시가 최근 5개년간 위촉한 52팀의 홍보대사 중에는 서울시 홍보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임되는 경우가 있는 등 서울시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에 특별한 홍보성과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홍보대사의 연임은 최대 2차례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홍보대사 연임 가능 횟수를 2차례로 규정 (안 제3조 제3항)

###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하되,”를 “하되, 2차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촉) ①·② (생   략)</p> <p>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lt;후단 신 설&gt;</p>	<p>제3조(위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하되, 2차례 --. 다만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p>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3조(위촉)제3항에 2차례 연임을 명시하고, 추가로 연임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단서를 신설<sup>1)</sup>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해당규정의 홍보대사 총원 영향] 홍보대사 총원이 변경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해당 규정은 연임예외에 관한 사안 일 뿐 홍보대사 총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